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핵심(요약)설명서

개 요	본 설명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가입하기 전에 고객에게 계좌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주의]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국내시장 복귀계좌	투자자가 2025 년 12 월 23 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해주는 전용 계좌
종합(주식)계좌	해외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 납부 필수 계좌

■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6 등급(매우낮은위험)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요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 및 매도하여 매도결제일 자동원화환전 발생 후 1년 경과하기전 출금 또는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②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여러 날에 걸쳐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마지막 납입일(해외주식 매도 후 결제 시 자동원화 환전 발생한 마지막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만기가 되며, 만기이전에 중도해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모두 미적용 (부분 세제혜택 불가)합니다.
③ 국내시장복귀계좌 이 외의 계좌(연금계좌 및 ISA등 모든 계좌)에서 고객이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시, 해당금액과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매도금액으로 조정비율을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결정되므로, 해당 순매수금액이 큰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계좌개설시점, 해외주식입고 시점은 공제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아래 해외주식 매도결제일을 기준으로 공제 비율이 바뀌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매도 결제일	공제비율
2026 년 1 월 1 일 ~ 5 월 31 일	100%
2026 년 6 월 1 일 ~ 7 월 31 일	80%
2026 년 8 월 1 일 ~ 12 월 31 일	50%

② 해외주식 소수점 잔고는 입고 불가능 합니다.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타사에서 입고 시 해외주식의 매수일자가 2025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요

제도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6 및 하위 법령에 의거 국내시장복귀계좌 (RIA_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신설되었으며, 해외주식(국외상장주식)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 국내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도결제일을 기준으로 1년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납입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미성년자 포함)
가입기한		2026년 12월 31일
납입한도		5,000만원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 가능)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개설해도 총 납입한도 합계액은 5천만원 초과 불가
만기		입고된 해외주식의 매도대금이 원화로 환전 된 마지막 날(최종 매도결제일)을 기준으로 1년 ※ 여러 날에 걸쳐 해외주식 매도한 경우 마지막 납입일 기준 1년
만기해지		만기가 도래한 계좌는 만기 해지 후 종합(주식)계좌로 전환 가능
중도해지		**납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 미경과한 원금 인출 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모두 미적용(부분 세제혜택 불가)** ※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은 고객이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중도해지 신청 당일은 해지취소 가능
특별해지		계좌 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여도 공제 받은 세제 혜택은 유지 * [부득이한 사유] ① 계좌보유자의 사망 ② 인출일 전 3개월이내에 천재지변 ③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입금	원화	불가 (단, 미수금 변제 용도의 미수금액 입금은 허용)
	외화	불가
출금	원화	**- 매도결제일(납입일)로부터 1 년 경과 시 출금 가능** - 국내상품 매매수익 등 원화자산잔고* 기준 납입 누적금액을 초과한 금액 출금 가능 *원화자산잔고 = D+2예수금 + [주식/주식형펀드 당일 체결기준 수량 × 전일 종가 **] ** 전일종가 ▶ 주식 : KRX전일종가, 주식형펀드 : 당일 기준가 - 인출 시 수익금(초과분)이 먼저 인출되고, 납입원금 중 '1년경과분'이 다음으로 인출 ※ 납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되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내 해외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 취소
	외화	불가
입고	국내	불가

<table>
<tr><td rowspan="2"></td><td>해외</td><td>- 당사내 동일명의 계좌에서의 대체입고만 허용
※ 타사에서 RIA계좌로 입고 시 매수일자가 2025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전인 수량에 한하여 입고 가능하며, 당사 동일명의 종합계좌에 입고 후 RIA계좌로 입고도 가능
- 입고가능 수량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 종목의 잔고수량과 RIA계좌 입고 직전 해당 종목의 잔고수량 중 작은 값
(예시)
<table>
<tr><th>사례</th><th>보유주식&수량
[2025.12.23 기준]</th><th>거래내역
[2025.12.24 이후]</th><th>입고
가능수량</th></tr>
<tr><td>①</td><td>애플 100주</td><td>50주 매도 후100주 매수
▶ 150주 보유</td><td>100주</td></tr>
<tr><td>②</td><td>아마존 100주</td><td>100주 매수 후 50주 매도
▶ 150주 보유</td><td>100주</td></tr>
<tr><td>③</td><td>테슬라 100주</td><td>50주 매도
▶ 50주 보유</td><td>50주</td></tr>
</table>
- 실시간 환전가능통화가 거래통화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예시) 미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독일,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스위스,네덜란드 등

※ 해외 소수점주식은 입고 불가
- 해외 소수점 주식의 온주 전환 시 매수일자가 온주 전환일로 바뀌므로, 2025. 12. 23이전 온주로 전환한 수량만 입고 가능</td></tr>
<tr><td rowspan="2">출고</td><td>국내</td><td>불가</td></tr>
<tr><td>해외</td><td>가능 ※ 한도초과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국내시장복귀계좌 이 외의 계좌로 자유롭게 출고가능</td></tr>
</table>

■ 매매

<table>
<tr><td>매매가능상품</td><td>해외상장주식 (입고 후 매도만 가능, 매수주문 불가능)
국내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
* 국내주식형 펀드는 설정·설립 1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아야 함</td></tr>
<tr><td>매도가능
수량제어</td><td>매도 주문 시 한도금액 제어를 위해 매도가능한 수량을 계산하여 제어
① 매도한도 = RIA납입한도 – 누적 해외주식매도 원화결제액(누적납입금) – 매도주문 미결제분 *
* 매도주문 미결제분 : 매도주문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결정된 최종시세가액 및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매매기준 환율
② 매도한도는 '1주단위'로 적용
③ 매도주문-주문체결-대금결제 기간사이의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 인정
④ 매도결제일에 납입한도금액 차감하지만, 매도체결일 산정된 RIA공제금액으로 차감
(예시)
<table>
<tr><td colspan="2">[가정] RIA계좌 납입한도 설정금액 : 5,000,000원
누적 해외주식매도 원화결제액(누적납입금) : 2,000,000원
해외주식입고 : 테슬라 500주 (50,000,000원= 전일 종가 $100 × 금일기준환율 1,000원)</td></tr>
<tr><td>남은한도금액</td><td>3,000,000만원 = 5,000,000원 – 2,000,000원</td></tr>
<tr><td>주당원화가격</td><td>100,000원 = $100×1,000원</td></tr>
<tr><td>매도가능수량</td><td>30주 =3,000,000원 / 100,000원</td></tr>
</table></td></tr>
</table>

자동환전		해외주식 매도결제대금은 결제일에 원화로 자동 환전 (환전재정산 시점의 시장환율로 환전)
권리	해외	-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 (신청불가)** : 유상청약, 공개매수, 주식매수 청구권 등 ※ 고객의 추가 의사결정이나 자금 입금이 필요한 권리의 경우 RIA 계좌에서 신청 불가 신청기간 내에 보유한 다른 계좌로 대체하여 신청가능 - **자동대체 및 지급 권리 (해외주식 권리이동계좌로 이관)** ① 무상 증자 및 주식배당 : 배정된 신주는 권리이동 계좌로 자동 입고 ② 회사 분할 및 합병 : 분할로 지급되는 주식은 권리이동계좌로 자동 대체 입고 합병의 경우는 RIA 계좌 입고 ③ 배당금 및 단수주 대금 : 발생한 외화현금 권리이동계좌로 자동 이체 - **외화 세금 및 출금 시 유의사항** ① 배당 등 외화 출금 : RIA 계좌에서 발생한 권리로 인해 외화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계좌내 원화가 외화로 자동 환전 처리 ② 기타대여금 발생 안내 : 환전 처리 시 계좌내 원화 자산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기타대여금으로 미수 처리 (추가입금을 통해 변제)
	국내	- **유상청약**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는 유상청약을 위한 현금 입금 불가 ※ 보유잔고 매도하거나, 해당 증서는 일반계좌로 대체하여 유상청약 진행 필요 - **주주채권청약** : 주주채권청약시 현금이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청약 후 입고된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으로 BW행사 가능, 매매 및 1년 이내 출고 불가 - **전환(CB) / BW 권리청구 관련 안내** 현금이 있는 경우 전환청구, 교환청구, BW (분리형, 비분리형) 전환 신청 가능 ※ RIA계좌 해지시까지 채권은 출고 불가, 신주인수권증권은 대체 출고 가능 - RIA계좌에서 출고한 상품은 RIA계좌로 재입고 불가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	해외주식 입고 후 매도한 자금이 원화로 자동환전 되는 날을 납입일로하여 1년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에 투자하고 해당 기간내 미인출시, 국내시장 복귀 시기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감면 ※ 단, 납입된 금액 합계액의 초과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별 공제비율	해외주식 매도시점(결제일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 비율만큼 공제 (1) 2026 년 1 월 01 일~ 5 월 31 일: 100% (2) 2026 년 6 월 01 일~ 7 월 31 일: 80% (3) 2026 년 8 월 01 일~12 월 31 일: 50% ※ 납입시기(매도결제일)가 속한 분기별로 감면혜택 비율 차등 적용
순매수금액	RIA계좌 이 외의 계좌(연금계좌 및 ISA등 모든 계좌)에서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해외주식형 펀드* 등 해외상품에 투자한 금액(순매수금액)과 RIA계좌에서 매도한 금액으로 조정비율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해 세제혜택 축소 ※ 국내시장 복귀 시 제공하는 세액 감면 혜택이므로 **RIA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한 경우라도 RIA계좌의 감면혜택은 축소** ※ 순매수금액은 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므로, RIA계좌 개설 전 해외주식 매수분도 계산 * 해외주식형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 1개월 이상)

조정비율	조정비율 공식: 1-(RIA외 계좌의 해외상품 순매수금액/RIA 계좌의 해외주식 매도금액) * 금액 산정 시,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각각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
양도소득세 공제 산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 기본공제(250만원) – RIA 공제금액) * 양도소득세율

■ RIA 공제금액 계산방법 예시

- 주요가정

구 분		'26.5 월까지	'26.6 월~7 월	'26.8 월~12 월
기간별 가중치		100%	80%	50%
RIA 內 계좌 (매도만가능)	해외주식매도금액	2,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매수원금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필요경비	5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양도소득금액	1,000 만원	400 만원	400 만원
RIA 外 계좌 거래 (매수,매도 모두가능) *매매가능대상상품	순매수		1,000 만원	
	순매도			500 만원

- 계산 예시

[1 단계 : RIA계좌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공제액(조정 전) 계산]	
해외주식매도금액	**3,300 만원** = (2,000 만원 × 100%) + (1,000 만원 × 80%) + (1,000 만원 × 50%)
양도소득(기간) 공제액	**1,520 만원** = (1,000 만원 × 100%) + (400 만원 × 80%) + (400 만원 × 50%)
[2 단계 :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계산]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550 만원** = (0 원 × 100%) + (1,000 만원 × 80%) + (-500 만원 × 50%)
[3 단계 : 최종공제금액(조정후) 계산]	
조정비율	**약 83.33%** =1 – (550 만원 / 3,300 만원)
최종공제액	**약 1,266 만원** =1,520 만원 × 83.33%
[4 단계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세 액	**약 62 만원** = ((1,000 만원+400 만원+400 만원) -250 만원 – 1,266 만원) ×22%

■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당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투자에 대한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대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아닌 다른 모든 금융계좌(연금계좌 및 ISA등 포함)에서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 및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세제혜택이 축소됩니다. ▶ 순매수금액 계산 시 결제시점 별로 차등화된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을 사고 팔아도 시점에 따라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6 년 1 월 01 일~ 5 월 31 일: 100% (2) 2026 년 6 월 01 일~ 7 월 31 일: 80% (3) 2026 년 8 월 01 일~12 월 31 일: 50%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세제혜택 차감대상상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세제혜택 차감대상상품

대상상품군		법 및 시행령(안)	세부상품	비고
국외상장주식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상장 주식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상장주식 (DR포함)	해외거래소에 상장된주식·DR·ETF·ETN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국외 상장주식 대체재산	**국내 설정. 발행 해외투자 ETF, ETN**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 (변동성지수포함)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국내 설정. 발행 ETF와 ETN	해외상품*을 기초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ETN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주식, 채권, 원유등 상품, 통화 등 또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등)이나 그 가격을 기초로 만들어진 지수	기초자산은 제한없이 모든 해외자산이며, 편입비율 요건 없음
	국내 설정. 설립 해외주식형 펀드 ※모자형. 재간접형. 합성형 펀드 제외	펀드 설정. 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해외주식형펀드 ① 펀드 설정. 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 ② 3개월(또는 설정일부터)평잔기준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주식등* 비중 60% 이상 *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DR, ETF, ETN 포함	해외주식등에 포함되는 자산 기준은 개인이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고객 권익 보호 사항

1. 해당상품은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2.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4.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